

12 勤勞者住宅團地內 附帶·福利施設 設置基準

1. 적용대상

근로자주택건설 단지내 부대·복지시설

거리 등을 고려하여 집중 또는 분산 배치
토록 함.

2. 설치기준

별표

다. 복지후생시설

관리사무소, 노인정, 주민공동시설, 탁
아소 등은 가급적 동일건축물내에 배치하
고 각 시설의 규모를 입주민의 인적구성
등 제반 여건에 따라 이 기준의 범위에서
용통성있게 배분하되, 탁아소는 이 기준
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100m² 이상
의 부속옥외유아놀이터를 적합한 시설을
설치하여야 함.

3. 기준 및 관계법령의 적용

가. 기준의 적용

근로자주택건설 단지내 시설의 설치는
타규정에 우선하여 이 기준을 적용하되,
동시에 주택건설촉진법, 동법시행령 및
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에
도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함.

4. 시설설치의 원칙

단지내의 모든 시설의 설치는 근로자주
택의 입주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
함

나. 시설의 배치

단지내의 시설은 단지의 규모 및 형태
에 따라 주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이용

<별표>

근로자주택 단지내 부대·복리시설 설치기준

| 시설종류 | | 시 설 규 모 (m ²) | | | | 비 고 |
|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
| | | 500세대 미만 | 500~1,000세대 | 1,000~2,500세대 | 2,500세대 이상 | |
| 복지후생 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리사무소 • 노인정 • 주민공동시설 (도서실·입주자 회의·가정 의례 주민취 미활동실 등) • 탁아소 | 150 이상 | 매세대당 0.4m ² 이상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탁아소는 50m²에 300세대 초과 매세대당 0.1m²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을 합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함. 단, 300m² 초과시는 300m²로 가함.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린생활시설 • 판매시설 | 500~1,500 | 1,000~3,000 | 2,000~6,000 | 3,000~7,5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근린생활시설 등의 면적은 약국 및 의원을 포함한 것임. |
| 약국 | 1개소 이상 | | | 2개소 이상 | | |
| 의원 | — | | 1개소 이상 | | | |
| 체육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동장 등 | 300 이상 |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2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내운동시설은 복지후생시설·생활편익시설 또는 공동주택 건물내에 설치가능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체육단련실 등 실내운동 시설 | 4개소 이상 | | 2개소 이상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놀이터 |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| | | | |
| 교육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치원 | 200 이상 |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| 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근에 이용가능한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학교 | • 국민학교는 2,500세대당 1개소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학교 | • 중학교는 5,000세대당 1개소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고등학교 | • 고등학교는 5,000~7,500세대당 1개소 | | | | |
| 근린공공 시설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파출소 | • 파출소는 3,000~4,000세대당 1개소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동사무소 | • 동사무소는 3,000~5,000세대당 1개소 | | | |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체국 | • 우체국은 3,000~6,000세대당 1개소 | | | | |

* 학교 및 근린공공시설은 동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임.